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38호 2023. 11. 22.(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37호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23-139호	농어촌도로[웅양 장지(206호선)] 노선지정, 군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6
거창군 고시 제2023-14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11
거창군 고시 제2023-143호	도로명주소 고시	12
거창군 고시 제2023-144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1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680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5
거창군 공고 제2023-1682호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
거창군 공고 제2023-1683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24
거창군 공고 제2023-1685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4
거창군 공고 제2023-1686호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6
거창군 공고 제2023-1687호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56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16.

거 창 군 수

1. 사업목적 :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저수지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원 확보
2. 사업명 :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3.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번지 일원
4. 사업시행면적 : 유역면적 98.27ha, 수혜면적 29.5ha
5. 사업개요 : 저수지 축조 1개소(제당 L=106.0m, H=21.0m), 저수량 Q=128,230m³
6. 총사업비 : 7,50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3. 11월 ~ 2025. 12월
8.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9. 관계도서의 비치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055-940-3542)

거창군 고시 제2023-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하 천 명 (하천등급)	거창위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상림리 750번지 등 2필지	
	면 적	일시점용 : 691.0㎡, 영구점용 : 286.0㎡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23. 11. 13. ~ 2023. 12. 31. 영구점용 : 2023. 11. 13.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거열교 교각보호를 위한 전석깔기	

거창군 고시 제2023-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거창군수 (수도사업소장)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하 천 명 (하천등급)	계수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1127-46번지 등 6필지	
	면 적	영구점용 : 30.8㎡, 일시점용 : 122.2㎡	
	점용기간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2년간 영구점용 : 2023. 11. 16.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거열교 교각보호를 위한 전석깔기	

거창군 고시 제2023-138호

하천점용허가 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거창군수

신 청 인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 단장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번지
하 천 명 (하천등급)	대산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682번지 외 13필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557-28번지 외 5필지 추가]	
	면 적	일시점용 : 817.3㎡, 영구점용 : 428.5㎡ [일시점용 651.7㎡ 추가]	
	점용기간	영구점용 : 2019. 10. 21. ~ 영구점용 일시점용 : 2019. 10. 21. ~ 2024. 12. 31.(일시점용) - 공사용가도 : ~2024. 3. 31.(유효기간 연장 불가)	
	목적 및 사유	고속국도 제14호선 교각 및 공사용 가도 설치	

농어촌도로[응양 장지(206호선)] 노선지정, 군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경남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27-1번지 일원 「응양 장지(206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의제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1.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응양	리도	장지선	206호선	응양면 한기리 913	응양면 신촌리 725	1.38	-	6.5	6.5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 군관리계획 결정(신설) 내용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신설)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551	8.0 ~ 18.0	국지 도로	1,435	중로2-34 (한기리923-9)	신촌리 620-4	일반 도로	-	-	리도 206호선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소로 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 8.0~18.0m - 연장 : 1,43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한 폭원(B=3.0~4.0m)과 포장불량 등의 여건을 가진 현황도로를 확장개설(신설)하여 원활한 차량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농어촌도로(리도)
- 나. 명 칭 : 웅양 장지(206호선)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27-1번지 일원
- 나. 규 모 : 농어촌도로 확포장(면적 13,52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거창군수
- 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4. 1.
-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4.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계재 생략)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89,377	13,406			
1	웅양면 신촌리	12-1	대	613	44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180	이*재	
2	웅양면 신촌리	12-2	도	26	13		거창군	
3	웅양면 신촌리	16-1	전	1,643	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23 현대파크빌 -1203	이*식	
4	웅양면 신촌리	16-2	도	136	136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21	장*암	
5	웅양면 신촌리	17-1	전	1,682	118	거창군 거창읍 대평5길 38-8, 에이동 506호	유*종	
6	웅양면 신촌리	17-2	도	609	455		거창군	
7	웅양면 신촌리	18-1	전	337	105	거창군 웅양면 송산길 215-13	정*한	
8	웅양면 신촌리	19-1	전	17	17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21	이*두	
9	웅양면 신촌리	20-2	전	1,355	10	서울 강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4차아파트211동304호	이*복	
10	웅양면 신촌리	21-1	도	40	4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495	송*조	
11	웅양면 신촌리	27-1	도	228	228		거창군	
12	웅양면 신촌리	27-2	대	660	9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125	변*욱	
13	웅양면 신촌리	27-4	전	831	42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125	변*욱	
14	웅양면 신촌리	28-1	전	1,742	89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55, 101동 1603호	정*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5	응양면 신촌리	28-2	도	63	63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81	채*춘	
16	응양면 신촌리	28-3	도	17	17		거창군	
17	응양면 신촌리	29-1	전	1,785	112	거창군 응양면 송산길 215-13	정*한	
18	응양면 신촌리	29-2	전	2,226	174	거창군 응양면 송산길 215-13	정*한	
19	응양면 신촌리	29-4	도	20	20		거창군	
20	응양면 신촌리	29-5	도	89	89		거창군	
21	응양면 신촌리	30	전	1,550	10	부산 북구 화명동 2307 화명2차현대아파트 202동 604호	전*성	
22	응양면 신촌리	33-4	대	755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101동 2206호	김*금	
23	응양면 신촌리	44	구	108	13		농림축산 식품부	
24	응양면 신촌리	51-2	도	506	373		거창군	
25	응양면 신촌리	51-3	전	2,447	120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500-12	정*연	
26	응양면 신촌리	51-4	임	333	333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500-12	정*연	
27	응양면 신촌리	53-1	임	175	91	서울 종로구 창성동 76-1	정*순	
28	응양면 신촌리	53-2	도	225	225		거창군	
29	응양면 신촌리	53-3	임	96	59		김*두	
30	응양면 신촌리	55-2	도	50	50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96	박*기	
31	응양면 신촌리	56-2	도	60	35		거창군	
32	응양면 신촌리	57-1	도	99	99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08	유*성	
33	응양면 신촌리	59	전	2,161	57	거창군 응양면 진마루길 125	변*옥	
34	응양면 신촌리	63-1	전	197	15	거창군 응양면 진마루길 125	변*옥	
35	응양면 신촌리	90-3	답	537	357		거창군	
36	응양면 신촌리	90	답	3,638	467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87	백*술	
37	응양면 신촌리	620-1	도	53	53	거창군 응양면 동호리 747	오*호	
38	응양면 신촌리	620-3	대	466	43	거창군 응양면 진마루길 235	김*현	
39	응양면 신촌리	621-1	대	390	31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21	김*철	
40	응양면 신촌리	621-2	도	7	7		거창군	
41	응양면 신촌리	622-1	도	142	142		거창군	
42	응양면 신촌리	622-2	목	660	40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72	이*구	
43	응양면 신촌리	622-3	답	742	123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72	이*구	
44	응양면 신촌리	626-1	도	552	160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674	장*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45	웅양면 신촌리	626-6	전	2,906	178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26-2	김*색	
46	웅양면 신촌리	653-1	도	13	13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74	장*윤	
47	웅양면 신촌리	653-2	전	1,931	54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02	유*종	
48	웅양면 신촌리	654-1	전	2,034	33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02	유*종	
49	웅양면 신촌리	655-1	도	129	94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73	공*철	
50	웅양면 신촌리	655-2	전	3,369	83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258	김*숙	
51	웅양면 신촌리	656-1	도	1	129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21	장*암	
52	웅양면 신촌리	656-2	전	2,853	1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주공아파트 104-1205	임*옥	
53	웅양면 신촌리	657-1	전	1,574	24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55-84	김*자	
54	웅양면 신촌리	657-2	도	13	13		거창군	
55	웅양면 신촌리	657-3	도	56	7		거창군	
56	웅양면 신촌리	658-1	전	2,860	51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240-5	이*구	
57	웅양면 신촌리	658-2	도	36	36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240-5	이*구	
58	웅양면 신촌리	658-4	도	4	4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240-5	이*구	
59	웅양면 신촌리	659-2	도	3	3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72	김*기	
60	웅양면 신촌리	659-4	도	31	9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72	김*기	
61	웅양면 신촌리	660-1	임	9,480	101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52-1	인동장씨수오 파적화중증	
62	웅양면 신촌리	660-3	도	36	36		장*상	
63	웅양면 신촌리	660-4	도	926	6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1길 19, 101동 609호	장*동	
64	웅양면 신촌리	663-1	대	1,276	12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63	김*임	
65	웅양면 신촌리	663-3	도	60	60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67	채*옥	
66	웅양면 신촌리	664-2	도	96	5		거창군	
67	웅양면 신촌리	664-3	도	26	26		거창군	
68	웅양면 신촌리	664-4	대	211	8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21	김*철	
69	웅양면 신촌리	1679	도	5,020	1,746		국토 교통부	
70	웅양면 한기리	886-1	답	668	377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87	강*아	
71	웅양면 한기리	892	답	1,352	13	거창군 웅양면 한기2길 258-17	김*식	
72	웅양면 한기리	893-1	답	737	659		거창군	
73	웅양면 한기리	893	답	2,037	183	거창군 웅양면 한기2길 258-17	김*식	
74	웅양면 한기리	903-1	답	401	401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75	웅양면 한기리	903	답	1,249	38	거창군 웅양면 한기2길 258-17	김*식	
76	웅양면 한기리	904-1	답	414	370		거창군	
77	웅양면 한기리	911-1	답	286	286		거창군	
78	웅양면 한기리	912-2	도	149	104	경북 금릉군 대덕면 대리 682	백*대	
79	웅양면 한기리	912-3	답	374	309		거창군	
80	웅양면 한기리	913-1	답	14	14		거창군	
81	웅양면 한기리	913	답	3,227	5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58	김*수	
82	웅양면 한기리	914-2	도	331	331		거창군	
83	웅양면 한기리	914-3	답	417	417		거창군	
84	웅양면 한기리	922-3	답	15	8	서울 마포구 아현동 57-9	허*오	
85	웅양면 한기리	922-9	답	18	18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460	허*오	
86	웅양면 한기리	922-10	답	1	1	서울 마포구 아현동 57-9	허*오	
87	웅양면 한기리	923-1	학	1,734	337		거창군	
88	웅양면 한기리	923-5	답	158	27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2305	김*갑	
89	웅양면 한기리	923-6	답	109	11	거창군 웅양면 한기1길 21-2	김*명	
90	웅양면 한기리	923-7	도	69	69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58	김*명 외 4인	
91	웅양면 한기리	923-9	도	89	7		국토 교통부	
92	웅양면 한기리	923-12	답	157	157		거창군	
93	웅양면 한기리	923-13	학	90	90		거창군	
94	웅양면 한기리	923-14	답	54	54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58	김*명 외 4인	
95	웅양면 한기리	923-15	답	72	72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923-6	김*갑	
96	웅양면 한기리	924-2	답	181	181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19	김*봉	
97	웅양면 한기리	924-4	도	10	10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19	김*봉	
98	웅양면 한기리	924-5	답	14	14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19	김*봉	
99	웅양면 한기리	924-6	답	16	8		거창군	
100	웅양면 한기리	925-6	도	334	5		국토 교통부	
101	웅양면 한기리	926-10	답	767	5		거창군	
102	웅양면 한기리	1043-2	도	948	319		국토 교통부	
103	웅양면 한기리	1043-4	도	232	16		거창군	
104	웅양면 한기리	1054-7	천	7,641	770		환경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내용

구분	위치	개요			해제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상동	거창읍 상림리 1-21	붕괴위험	B	2,74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및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해제	
월성2	북상면 월성리 산88	붕괴위험	C	10,690		
중유	신원면 중유리 산3	붕괴위험	C	1,250		
진목1	남상면 둔동리 산35-2	붕괴위험	B	21,968		
신촌1	남하면 둔마리 산189-1	붕괴위험	C	2,684		
남산1	주상면 남산리 산5-5	붕괴위험	C	3,313		

2.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일 : 2023. 11. 17.

3. 문의처 : 거창군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055-940-3651)

4. 고시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및 게시판 등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981-70 등 4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508-7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11. 22.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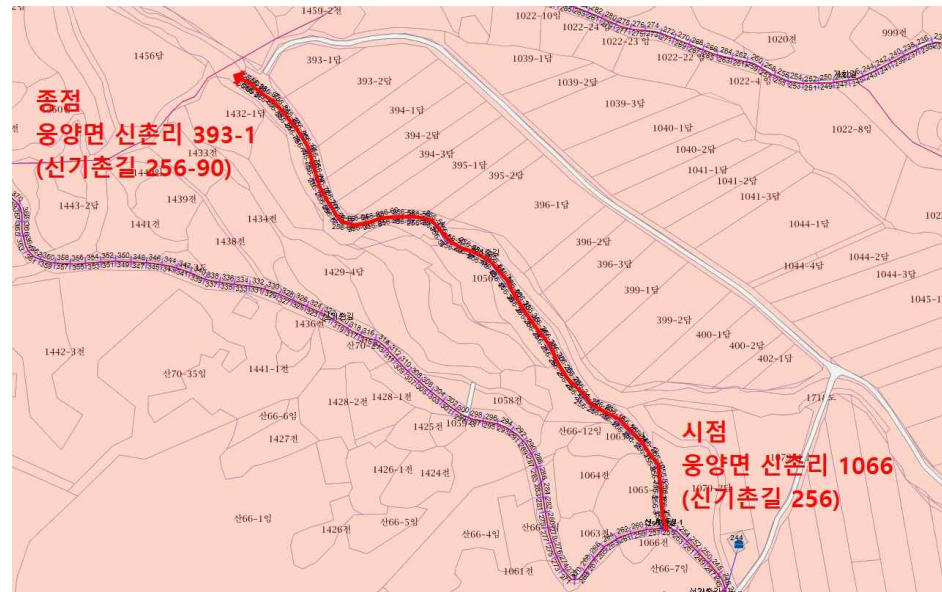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1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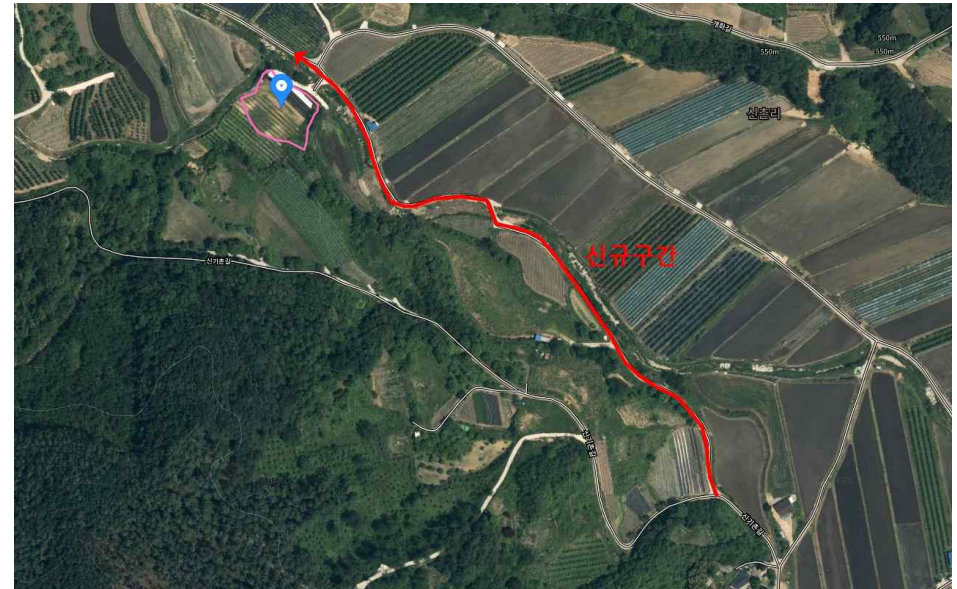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웅양면	변경 전	신기촌길	웅양면 신촌리 1066 (신기촌길 256)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신기촌길	웅양면 신촌리 1066 (신기촌길 256-1)	웅양면 신촌리 393-1 (신기촌길 256-9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의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군 자체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되어 왔으나,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비판 등 논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전문 폐지

4. 예고기간 : 2023. 11. 16.(목) ~ 11. 21.(화)

5. 의견제출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곳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주 소 : (우 50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전 화 : 055-940-8182 / 팩 스: 055-940-8119
- 이메일 : yong2060@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폐지조례안」 1부.
3.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 법 예 고 에 대 한 의 건 서				
입법예고명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거 창 군 수 귀 하				

[붙임 2]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례제 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정) 2006.09.26 조례 제1822호

(일부개정) 2009.06.17 조례 제19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연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총각"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성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6.17)
3. "국제결혼" 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거주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 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별지 제1, 2호서식)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군수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 ①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
- ② 군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과 거주등록 사실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3-1682호

<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직권 용도폐지 검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32조의3에 의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거창군수

1. 용도폐지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남하면 대야리 1649번지	구거	2,299㎡	30㎡	위치도 등 붙임 참고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3. 11. 17. ~ 2023. 11. 30.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11. 17. ~ 2023. 11. 30.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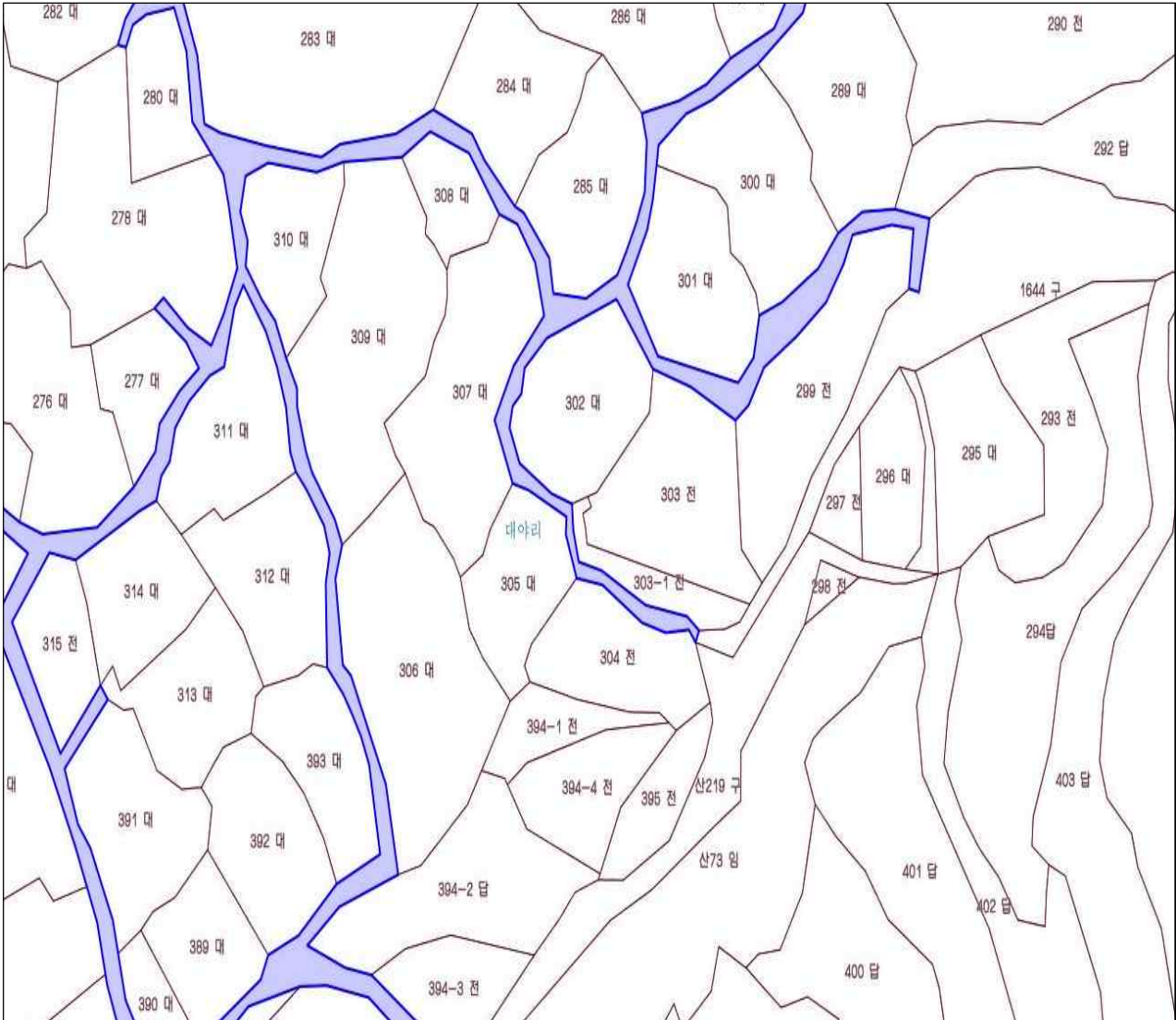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2

지적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상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계(1필지)				1필지	30㎡	
1	남하면 대야리	1649번지	구거	2,299㎡	30㎡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공고 제2023-1683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직인)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상마천	상마소하천 정비공사	가조면 마상리 999-4	가조면 마상리 376	622.5m (양안)	316m	교량2 개소	2023. 11.	2025. 1.	치수관리 재해예방	-
		이		하		여		백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 거창군 >

(2023년)

수계 (水系) 명	소하천 번호	소하천 명	소하천 총길이 (m)	유역 (流域) 면적 (km ²)	계획 하천 폭 (m)	정비 계획																
						전체		정비된 부분		이번 시행							장래 계획					
						사업량(m)		사업 비 (백만 원)	사업 량 (m)	사업 비 (백만 원)	위치		사업량(m)		사업비 (백만 원)	사업효과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시작 하는 지점	끝나 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농경 지 (ha)	건물 (동)	수 질 (pp m)	축제 (築堤)	호안 (護岸)		
낙동강	169	상마천	2,217	3.8	3.0 ~ 16.0	3,120 (양안)	1,560	4,943	-	-	-	가조 마상 리 376	가조 마상 리 999- 4	622.5 (양안)	316	2,000	3.2	2	-	2,498 (양안)	1,244	2,943

세부정비 시행계획

1.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 상마소하천 정비공사

2.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 재해에 강한 친수형 소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증대와 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개요

- 1)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일원
- 2) 사 업 량 : 하천정비 L=622.5m
- 3) 사 업 비 : 2,000백만원

3.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소하천정비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3. 11. ~ 2025. 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

- 13.편입용지조서 참조

6.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 비치

9.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10.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금액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비						비고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마소하천 정비공사	2,000	-	200	600	1,200	-	군비(전환) 50% 군비 50%

11.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낙동강유역환경청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거창군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에 따른 의제사항 협의
 -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별첨)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농지전용 협의 등

12. 소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안내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다.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편입용지조서(상마소하천 정비공사)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1,054.3	10,274.8					
소계	-	-	-	13,922.8	6,422					
1	가조면 마상리	999-4	답	120.9	12.1	-	경상남도			
2	"	999-2	답	576.8	166.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병산2길 14-3	변*일			
3	"	1108	구	4,897.7	3,593.2	-	국(농림수산부)			
4	"	998-1	답	432.6	432.6	-	거창군			
5	"	997-4	답	3.2	3.2	-	경상남도			
6	"	997-3	답	8.2	8.2	-	경상남도			
7	"	996-1	답	26.0	26.0	-	거창군			
8	"	1000-2	답	315.1	315.1	-	거창군			
9	"	1000-1	답	883.9	186.0	-	경상남도			
10	"	1001-2	답	197.4	197.4	-	거창군			
11	"	1001-1	답	24.1	24.1	-	경상남도			
12	"	1002-2	답	208.2	208.2	-	거창군			
13	"	1002-1	답	0.9	0.9	-	경상남도			
14	"	1101	구	2551.4	49.6	-	국(농림수산부)			
15	"	1053-1	답	181.2	181.2	-	경상남도			
16	"	1053	답	1,831.8	727.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7길 7, 104동 501호(남산동, 남산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김*권			
17	"	1052	답	1,604.7	23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6길 4	이*식			
18	"	1052-1	답	17.3	17.3	-	경상남도			
19	"	1052-2	답	30.7	30.7	-	거창군			
20	"	1051-1	답	10.7	10.7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1,054.4	10,274.8					
소계	-	-	-	27,131.5	3,852.8					
21	가조면 마상리	1051-2	답	61.3	61.3	-	거창군			
22	"	1102	구	2,497.1	38.4	-	국(농림수산부)			
23	"	1054	답	1,597.3	36.5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	가조*** *****학회			
24	"	1109	도	1,629.3	945.7	-	국(농림수산부)			
25	"	679-4	답	409.0	409.0	-	거창군			
26	"	679-3	답	28.0	28.0	-	경상남도			
27	"	684-5	답	80.0	47.0	-	거창군			
28	"	698	구	1,377.0	57.0	-	국(농림수산부)			
29	"	684-2	답	4,185.0	108.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01	신*호			
30	"	684-3	답	127.0	117.0	-	경상남도			
31	"	685-3	답	115.0	109.0	-	경상남도			
32	"	685-4	답	459.0	459.0	-	경상남도			
33	"	685-5	답	263.0	263.0	-	거창군			
34	"	693-3	답	1,397.0	125.0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남8길 10(두류동)	신*백			
35	"	693-5	답	696.0	696.0	-	거창군			
36	"	550-2	도	1,495.0	60.0	-	국(농림수산부)			
37	"	400	구	3,395.0	35.0	-	국(농림수산부)			
38	"	376-1	답	11.0	11.0	-	거창군			
39	"	376-2	답	29.0	29.0	-	거창군			
40	"	1096	구	1,373.3	62.4	-	국(농림수산부)			
41	"	1097	도	5,907.2	155.5	-	국(농림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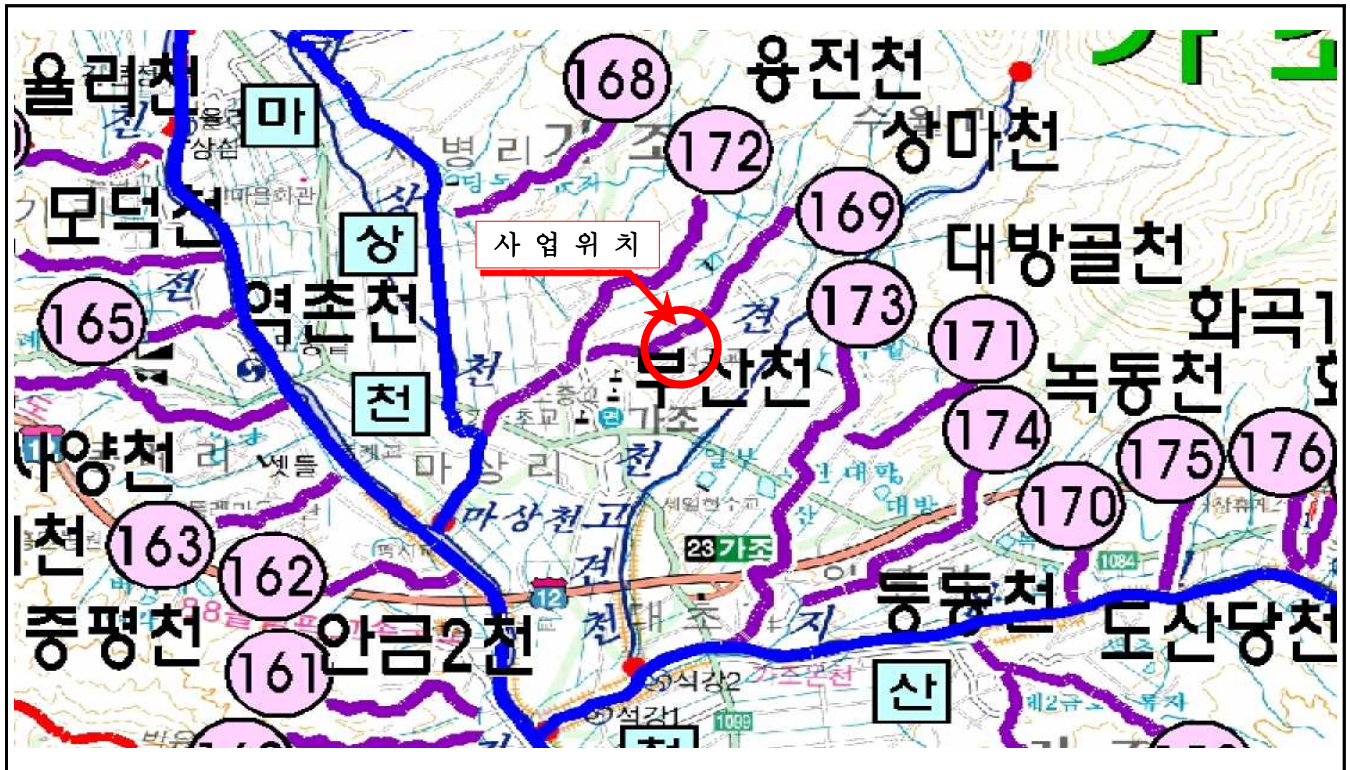
○ 영농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계	-	-	-	18,408.1	2,209.6					
1	가조면 마상리	999-2	답	576.8	166.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병산2길 14-3	신*선			
5	"	1001	답	792.1	197.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2길 98	손*식			
6	"	1002	답	4,940.7	208.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94	이*기			
7	"	1053	답	1,831.8	727.3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62번길9,106 동1905호(송림동,LH브리즈힐)	전*규			
8	"	1052	답	1,604.7	23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6길 4	이*식			
10	"	1054	답	1,597.0	36.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부산2길 124-1	최*해			
11	"	679-1	답	1,483.0	409.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78	최*자			
12	"	684-2	답	4,185.0	108.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01	신*호			
14	"	693-3	답	1,397.0	125.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2길 23-10	신*재			

○ 물건조서

연번	위 치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단 위	수량	비고
	시·군	읍·면	리	지 번					
1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002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10×6)	m'	60	-
					꽃사과	R2~3(약5년생)	주	2	-
					대추나무	약3년생	주	1	-
					블루베리	약10년생	주	1	-
					부추	노지부추(30×5)	m'	150	-
2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693-1	관리사	컨테이너(6×3)	식	1	-
					2층 창고	철제(3×2)	식	1	-
					1층 창고	철제(4×4)	m'	16	-
					표고막	철제(2×1.5)	식	1	-
					주목나무	R2~3(약5년생)	주	1	-
					옥향나무	H=0.5~1×W1~2(약10년생)	주	2	-
					장미나무	약10년생	주	2	-
					체리나무	R5~10×H1~2(약10년생)	주	1	-
					화살나무	약15년생	주	1	-
					반송나무	R10~15×W2(약15년생)	주	1	-
					반송나무	R15~20×W3(약20년생)	주	1	-
					대추나무	R25~30×H7(약20년생)	주	2	-
					으름덩굴나무	약15~30년생	주	1	-
					보리수	R15~30×H1~2(약20년생)	주	1	-
					철쭉나무	약5년생	주	1	-
					보리수	약5년생	주	1	-
					둥근주목	약5년생	주	2	-
					잔디	(10×2)	m'	20	-
					농업용전기	농업용(3~5KW)	식	1	-
					우물	H20~30(모터 등 포함)	식	1	-
					둥근주목	W1~1.5×H1~1.5(약30년생)	주	1	-
					둥근주목	R15~20×H1~2(약10~15년생)	주	1	-
					둥근주목	R10~15×H1(약10년생)	주	2	-
					선주목	R15~20×H2(약25년생)	주	2	-
					선주목	약10~15년생	주	2	-
					감나무	R5~7×H1~2(약15년생)	주	1	-
					감나무	약3년생	주	1	-
					자두나무	R3~7×H1~2(약10년생)	주	3	-
					자두나무	R7~12×H1~2(약15년생)	주	1	-
					살구나무	R20~25×H2~3(약20년생)	주	2	-
					대추나무	R15~20×H1~2(약10~15년생)	주	4	-
					홍매화	R3~7×H1~2(약15년생)	주	1	-
					철쭉나무	W0.3(약10년생)	주	9	-
					블루베리	약10년생	주	11	-
					초코베리	약10년생	주	1	-
					보리수	R5~10×H2(약15년생)	주	1	-
					조형소나무	R25~30×H1~2(약35년생)	주	1	-
					조형소나무	R20~25×H1~2(약25년생)	주	1	-
					조형소나무	R10~15×H1~2(약20년생)	주	1	-
					뽕나무	R10~15×H1~2(약10년생)	주	1	-
단풍나무	분재형R20~30(약30년생)	주	5	-					
산딸나무	R1~2×H1(약5년생)	주	4	-					
고엽나무	약7년생	주	1	-					
구지뽕나무	R15~20×H1~2(약10년생)	주	2	-					
기타수목	약5~10년생	주	2	-					
도라지	-	m'	20	-					

14. 위치도



소하천명	상마 소하천
------	--------



위 치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일원
-----	-------------------

15.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 ☎ 055-940-3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경남교육청 ‘2024년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에 따라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1) 현행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변경 :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제5호)

1) 행복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11. 17. ~ 11. 2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1. 21.(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1)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 2) 전화 055)940-8812, 팩스 055)940-8709, 이메일 j2m00@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055-940-8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제5호 중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복교육지구</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행복교육지구</u>”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p>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u>행복교육지구</u>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p><u>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미래교육지구</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미래교육지구</u>”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p>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u>미래교육지구</u>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 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
·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

화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1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1.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2)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 예방활동 시행·관리
	나. 주민참여 방법 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

	<p>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p>	<p>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p>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p>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p>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p>	<p>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사무		보급·관리·운영 등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 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 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2. 개정 이유

-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의 직무위임 및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금액을 확대·현실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행 제출 가능토록 정비함으로써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 금액 확대 및 기준금액 용어 정비(안 제3조)

- 1) 관리자(부군수) ⇒ 기업출납원(소장) 직무위임 금액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5천만원 이하	좌동
용역, 제조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물건 매입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그 밖에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2) 기준금액 용어 정비 : 예정금액 · 예정가격 → 추정금액

나.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확대 및 기준금액 용어 정비(안 제28조)

1)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또는 토지매입	3천만원 이하	좌동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1천5백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그 밖에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 기준금액 용어 정비 : 예정금액 → 추정금액

다.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제출서류 추가
(안 제51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행 제출 가능

4. 예고기간 : 2023. 11. 17.(금) ~ 12. 07.(목)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55) 940-8412 / FAX : 055) 940-840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055)940-8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제1호 중 “예정금액”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 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예정금액</u> 5,000만원 이하의 공사, <u>2,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u>예정가격 5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u>예정금액 200만원</u>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p>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 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추정금액</u> 5,000만원 이하의 공사, <u>3,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u>추정금액 2,0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u>추정금액 500만원</u>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예정금액</u>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u>1,500만원</u>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u>500만원</u>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p>② ~ ③ (생략)</p>	<p>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추정금액</u>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u>3,000만원</u>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u>2,000만원</u>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u>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하다.</p>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u>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하다.</p>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3. 9. 22.]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 6. 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시행 2020. 12. 10.]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6.]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2. 개정 이유

-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의 직무위임 및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금액을 확대·현실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행 제출 가능토록 정비함으로써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 금액 확대 및 기준금액 용어 정비(안 제3조)

- 1) 관리자(부군수) ⇒ 기업출납원(소장) 직무위임 금액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5천만원 이하	좌동
용역, 제조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물건 매입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그 밖에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2) 기준금액 용어 정비 : 예정금액 · 예정가격 → 추정금액

나.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확대 및 기준금액 용어 정비(안 제28조)

1)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또는 토지매입	3천만원 이하	좌동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1천5백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그 밖에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 기준금액 용어 정비 : 예정금액 → 추정금액

다.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제출서류 추가
(안 제51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행 제출 가능

4. 예고기간 : 2023. 11. 17.(금) ~ 12. 07.(목)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55) 940-8412 / FAX : 055) 940-840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055)940-8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제1호 중 “예정금액”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 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예정금액</u> 5,000만원 이하의 공사, <u>2,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u>예정가격 5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u>예정금액 200만원</u>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p>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 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추정금액</u> 5,000만원 이하의 공사, <u>3,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u>추정금액 2,0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u>추정금액 500만원</u>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예정금액</u>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u>1,500만원</u>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u>500만원</u>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p>② ~ ③ (생략)</p>	<p>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추정금액</u>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u>3,000만원</u>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u>2,000만원</u>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u>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하다.</p>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u>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하다.</p>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3. 9. 22.]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 6. 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시행 2020. 12. 10.]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6.]